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155

제안연월일 : 2004. 7. 8.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무

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증진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3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남북관계는 북핵다자회담이 진행중이고,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군사·외교·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와 협상이 행해지고,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발전시키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